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확인자 : 재무과장 제 정 봉 (인)

작성자 : 정수담당 이 문 옥 (인)

연 번	건 명	지 적 사 항 요 약	시 정 및 조 치 사 항 (계 획)	담 당 부 서				
1	○ 지방세의정수부진 및 결손분과다	현황(세외수입제외) <span style="float: right;">(단위:천원)</span>						
		년도	징수 결정액	실수납액	징수 율	미수납액	결손 처분액	이월액
		2001	11,796,024	10,616,646	90.0	1,179,378	227,722	951,657
		2000	10,761,593	10,761,593	90.5	1,118,760	87,473	1031,287
		지방세(세외수입제외) 징수실적이 징수결정액 11,796,024천원에서 수납액 10,616,646천으로 징수율 90.0%로서 전년도 보다 0.5% 부진하며, 특히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1,089,936천원에서 수납액 386,887천원으로 징수율 35.4%로서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그리고 지방세의 결손처분액도 전년도 대비 259.7%가 증가되어 징수결정액의 3.1%인 227,722천원(1,102건)의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되어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징수율 부진 및 결손액 과다 원인 분석 . IMF 경제난 여파로 사업체 부도 증가. . 자동차세 및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채권확보 곤란. . 행불, 무재산, 생계곤란등 무능력자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 .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기구 인력 감소. <input type="checkbox"/> 향후 징수대책 . 징수가능 채납자 담당책임자 지정 지속적인 납부독려. . 전국단위 재산추적으로 조기 채권확보(년4회) . 고액, 고질채납자 급여, 예금등 채권압류 확대(년2회) . 총당가능 기압류재산 신속한 공매처분 실시. . 휴대용 단말기 활용 고질 채납차량 번호판 영치(월1회) . 고의, 고질 채납자 리스트 작성 특별관리(180명)	재무과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확인자 : 재무과장 제 정 봉 (인)

작성자 : 징수담당 이 문 옥 (인)

연 번	건 명	지 적 사 항 요 약	시 정 및 조 치 사 항 (계 획)	담 당 부 서								
2	○ 고질체납 징수대책 미흡	현황 <span style="float: right;">(단위:천원)</span>	<input type="checkbox"/> <b>고질체납액 증가원인 분석</b>  . 경제난 여파로 자금부족 및 부도업체 증가. . 압류재산 공매 및 법원경매 낙찰 지연. .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채권 확보 곤란. . 납부기피 자동차세 고질 체납액 증가. (군세 체납액의50%)  <input type="checkbox"/> <b>고질체납액 일소대책</b>  .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로 조세 형평성 유지. . 무능력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명목적 체납액 일소. .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년2회)	재무과								
		구분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포함)	미수 납액	사 유 별				
								거 소 불 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 및 압류중	기 타
		계			214,448,806	212,154,733	2,294,073	22,027	42,067	739,287	1,473,824	16,868
		일반 회계			203,480,380	201,293,087	2,187,293	22,027	22,027	632,507	1,473,827	16,868
특별 회계	10,968,426	10,861,646	106,780	0	0	106,780	0	0				
		미수납액은 사유별 현황에 따라 징수대책을 강구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특히 고질체납 징수대책을 소홀히 하여 미수납액 2,294,073천원에 32.2%인 793,287천원이 체납되어 징수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확인자 : 재무과장 제 정 봉 

작성자 : 정수담당 이 문 옥 

연 번	건 명	지 적 사 항 요 약	시 정 및 조 치 사 항 (계 획)	담 당 부 서																								
3	○ 세외수입중 변상금 과 과태료 징수부진	현황 <span style="float: right;">(단위:천원)</span>	<input type="checkbox"/> <b>세외수입 징수부진 요인 분석</b>  .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 불만으로 납부기피. . 세외수입 소관부서 적극적인 징수노력 부족. . 세외수입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기능 미흡.  <input type="checkbox"/> <b>향후 징수대책</b>  . 변상금,과태료 고질 체납자 급여,예금등 채권압류 확대. .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 부동산 유.무조회 압류. . 세외수입 과세자료 전산화 추진으로 업무능률 향상. . 소관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년2회)	재무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과 목</th> <th style="width: 15%;">징수결정액</th> <th style="width: 15%;">수 납 액</th> <th style="width: 15%;">징 수 율</th> <th style="width: 15%;">미수납액</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변 상 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39,192</td> <td style="text-align: center;">28,665</td> <td style="text-align: center;">73.1</td> <td style="text-align: center;">10,537</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 태 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546,606</td> <td style="text-align: center;">195,992</td> <td style="text-align: center;">35.8</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614</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 년 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1,276,541</td> <td style="text-align: center;">311,569</td> <td style="text-align: center;">24.4</td> <td style="text-align: center;">961,972</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상금과 과태료</td> </tr> </tbody> </table>			과 목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 수 율	미수납액	비 고	변 상 금	39,192	28,665	73.1	10,537		과 태 료	546,606	195,992	35.8	350,614		과 년 도	1,276,541	311,569	24.4	961,972	변상금과 과태료
		과 목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 수 율	미수납액	비 고																			
		변 상 금			39,192	28,665	73.1	10,537																				
		과 태 료			546,606	195,992	35.8	350,614																				
과 년 도	1,276,541	311,569	24.4	961,972	변상금과 과태료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수납현황은 징수결정액 51,673,057천원에 수납액50,437,421천원으로 97.6%가 징수되었으나 그 중 변상금 및 과태료의 징수실적은 당해 연도분은 38.3% 과년도분은 12.6% 계 24.4%인 964,972천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임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확인자 : 기획감사실장 김 일 대 (인)

작성자 : 예산담당 제 인 호 (인)

연번	건 명	지 적 사 항 요 약	시정및조치사항(계획)	담당부서						
4	○ 세출예산 미집행 과다발생	현황 <span style="float: right;">(단위:천원)</span>		○ 지방재정법제3조1항에서 “각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원칙을 관철한다면 불합리한 예산 집행에 있어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게되어 예외적으로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  ○ 2001년도 총예산금액 212,307백만원중 집행이 64.9%인 137,777백만원이고, 미지출이 35.1%인 74,530백만원으로 이중 36.1%인 67,036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미집행 과다발생 요인으로 정부의 2000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당초 503억원에서 606억원으로 103억원이 증액교부되었고 7.29~8.1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기획감사실 (전부서)					
		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율(%)	이월액 (31.6%)	불용액 (3.5%)	
		회계별					2001	2000		
		계	212,306,965			137,776,502	64.9	71.9	67,035,383	7,495,080
		일반회계	201,121,645			128,973,916	64.1	70.8	66,287,983	5,859,746
특별회계	11,185,320	8,802,586	78.7	88.4	747,400	1,635,334				
		지방재정법제3조제1항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예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1년도 예산집행상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예산금액 212,306,965천원 지출은 137,776,502천원으로 64.9%(전년도 71.9%)이며, 미지출내역은 이월액 31.6%, 불용액 3.5%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4.1% 특별회계는 78.7%이나 특별회계중 미집행 과다발생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21.9% 농공단지조성 39.5% 주택사업58.7%순이다. 이와같이 미집행예산 과다발생은 담당공무원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업무추진의 소극적인 자세와 안일한 생각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고정관념의 결과라 생각되며, 미집행예산의 과다발생은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의 지연과 간접적으로 군민의 부담만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됨.								



연번	건 명	지 적 사 항 요 약	시정및조치사항(계획)	담당부서
4			<p>비 92 억원이 하반기에 교부결정되는 등 일부 주요사업들이 2000년 10월말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므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다고 보여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현재 연리 5%로 일반 시중은행의 영농자금 대출금리 3%보다 높아 군민들이 기금신청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이며, 농공단지과 주택사업은 미도래된 채권수입에 비해 채무(지방채상환)가 적으므로 인하여 집행요인이 미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li> <li>○ 앞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주요사업의 정기분석과 직무교육을 통해 조기발주 및 공격적인 현장행정 추진으로 회계연도 내 마무리함은 물론 사업부서와 지출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집행상황과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기획감사실 (전부서)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확인자 : 기획감사실장 김 일 대  
 작성자 : 예산담당 제 인 호



연번	건 명	지 적 사 항 요 약	시정및조치사항(계획)	담당부서																																	
5	○ 이월사업의 증가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rowspan="2">년 도</th> <th rowspan="2">총 예산액</th> <th rowspan="2">지출액</th> <th rowspan="2">%</th> <th colspan="5">이 월 액</th> <th rowspan="2">불용액</th> </tr> <tr> <th>계</th> <th>명 시 이 월</th> <th>사 고 이 월</th> <th>계속비</th> <th></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1</td> <td style="text-align: right;">212,306,965</td> <td style="text-align: right;">137,776,502</td> <td style="text-align: center;">64.9</td> <td style="text-align: right;">67,035,383</td> <td style="text-align: right;">48,020,551</td> <td style="text-align: right;">5,857,559</td> <td style="text-align: right;">13,157,273</td> <td style="text-align: right;">7,495,08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style="text-align: right;">154,104,324</td> <td style="text-align: right;">110,758,694</td> <td style="text-align: center;">71.9</td> <td style="text-align: right;">36,710,121</td> <td style="text-align: right;">22,400,125</td> <td style="text-align: right;">12,504,528</td> <td style="text-align: right;">1,805,473</td> <td style="text-align: right;">6,635,509</td> </tr> </tbody> </table> <p>사업의 익년도 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연도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사업이 계속될 시 이월할 수 있는 바 부지미확보, 승인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 사유로 총 190건 67,035,382천원                      (명시이월 167건, 48,020,551천원, 사고이월 15건, 사업비 5,857,559천원, 계속사업이월 8건 사업비 13,157,27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1.5%이며, 전년도의 23.8%보다 7.7%(사업비30,325,262천원) 증가함은 관계부서간 협조 부족 및 사업여건과 시기분석 미흡으로 생각되며 또한 업무추진이 미흡한 실정임</p>	년 도	총 예산액	지출액	%	이 월 액					불용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2001	212,306,965	137,776,502	64.9	67,035,383	48,020,551	5,857,559	13,157,273	7,495,080	2000	154,104,324	110,758,694	71.9	36,710,121	22,400,125	12,504,528	1,805,473	6,635,509	<p>○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명시·사고·계속비 등의 예외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p> <p>○ 전년대비 이월사업의 증감내역은 명시이월이 54건 22,101백만원에서 금년도 167건 48,021백만원으로 113건 25,92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고이월이 122건 12,368백만원에서 금년도 15건 5,858백만원으로 107건 6,510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법령해석 미흡에 따른 것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이월사업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므로서 당해년도에 명시이월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p>	기획감사실 (전부서)
년 도	총 예산액	지출액					%	이 월 액					불용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2001	212,306,965	137,776,502	64.9	67,035,383	48,020,551	5,857,559	13,157,273	7,495,080																													
2000	154,104,324	110,758,694	71.9	36,710,121	22,400,125	12,504,528	1,805,473	6,635,509																													

연번	건명	지적사항 요약	시정및조치사항(계획)	담당부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사업의 주요내용별로는 명시이월중 예산편성시기 부적정 10건 2,631백만원, 행정절차미이행 15건 4,227백만원, 보상협의(민원발생등)지연 54건 15,992백만원, 공기부족 등 88건 25,171백만원으로 대부분 단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닌 2~3년에 걸친 계속사업입니다.</li> <li>○ 그리고 사고이월은 대부분 토지보상협의 지연, 중앙부처 승인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향후 조기발주를 통해 회계연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계연도내 처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고·명시이월하되 차기년도 예산편성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이월사업 30%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li> </ul>	기획감사실 (전부서)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확인자 : 기획감사실장 김 일 대 (인)

작성자 : 예산담당 제 인 호 (인)

연번	건 명	지 적 사 항 요 약	시정및조치사항(계획)	담당부서							
6	○ 예산집행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 <span style="float: right;">(단위:천원)</span>	○ 2001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64,547,851천원중 3.56%인 5,859,74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이는 주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예산 등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연말 정리추경시 강력한 통제로 삭감조치하고 있으나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불용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앞으로 경상적 경비는 300천원, 사업예산은 5,000천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시 의무적 삭감조치와 모든 사업의 완결위주 예산운영은 물론 예산절감을 강력히 실천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부서)							
		구 분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 경취소	집행 사유 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계			5,859,747	0	26.645 (0.46%)	34,313 (0.46%)	3,119,301 (10.18%)	596,674 (10.18%)	2,082,814 (35.54%)
		일반행정비			1,260,307	0	0	17,396	1,184,905	31,361	0
		사회개발비			1,029,330	0	0	10,853	669,443	349,034	0
		경제개발비			1,113,252	0	0	3,784	904,236	205,232	0
		민방위비			18,068	0	0	146	6,875	11,047	0
		지원 및 기타경비			2,366,103	0	0	0	283,289	0	2,028,814
		읍면			72,687	0	0	2,1347	70,553	0	0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164,547,851천원중 예산집행 불용액이 5,859,747천원(3.56%) 과대 발생하였으며,이중에서 예산절감액 34,313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세밀한 원인분석을 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 하여야 함에도 일반행정비(1000) 불용액 1,260,308천원과 예비비(5400) 집행잔액 2,082,814천원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재원을 사장시켜 불용처리 하였으며 사회개발비(2000) 불용액 1,260,330천원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반납 349,034천원 발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복지 체계구축, 중산서민층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투자확충이 필요함에도 국도비 보조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음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확인자 : 도시과장 빈영호 (인)

작성자 : 기술지원담당 정윤준 (인)

연번	건명	지적사항 요약	시정 및 조치사항(계획)	담당부서
7	○ 예산의 목적외 사용부적점	<input type="checkbox"/> 예산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제3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고성군관문 상징물 설치예산(예산100,000천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화검문소 설치비 40,000천원에서 아무런 절차없이 임의로 8,218,7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은 예산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건은 우리군 및 고성읍 관문에 상징물을 설치하여 관광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01년 제1회 추경시 100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하던 중, 공릉나라축제와 도민체전 등 각종 대외행사가 임박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2회 추경시 같은 예산과목에 편성된 회화검문소 설치사업비 예산으로 사업추진하였습니다</li> <li>- 예산목적외 사용 절차가 선행되지 못하여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으며, 향후 예산집행시에는 예산회계규칙을 엄수하여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음</li> </ul>	도시과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확인자 : 재무과장 제 정 봉

작성자 : 경리담당 김 차 영



연 번	건 명	지 적 사 항 요 약	시 정 및 조 치 사 항 ( <small>계획</small> )	담 당 부 서					
8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소홀	<b>현황</b> <span style="float: right;">(단위:천원)</span>		○ 기 예치된 각종 보증금의 반환기간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반환기간 종료된 보증금 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 기타 임시보관적 성격의 보 관금에 대하여는 수납, 지출을 철저히 관리	재무과 자치행정과				
		구분	전년도말			당 해 년 도			당해연도말
		종류	현재액			증 가 액	지 출 액	차 감 액	현 재 액
		합계	590,236,684			2,765,706,280	2,677,782,030	87,924,250	678,160,934
		보증금	33,124,882			151,457,260	84,195,590	67,261,670	400,386,552
		보관금	131,366,018			168,807,950	171,721,990	-2,914,040	128,451,978
		기	125,745,784			2,445,441,070	2,421,864,450	23,576,620	149,322,404
		국민연금	3,682,920			41,549,850	41,949,120	-399,270	3,283,650
		의료보험	21,264,540			259,741,400	259,230,530	510,870	21,775,410
		타	4			173,148,610	173,144,710	3,900	3,904
대부금	4	173,148,610	173,144,710	3,900	3,904				
고용보험	112,250	4,327,240	4,432,610	-105,370	6,800				
		재무회계규칙제77조에 의하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에도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 여야 하는데 보증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타 잠종금 중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대부금, 고용보험은 성질 상 잔액이나 부족분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현금인데도 당해연도 에 부족분이 △399,270원, 의료보험은 잔액 510,870원 대부금 잔 액 3,900 고용보험료는 부족분 △105,370원이 발생하고 있음은 관리소홀로 인정됨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확인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작성자 : 사회복지담당    제정락



연번	전명	지적사항 요약	시정및조치사항(계획)	담당부서			
9	○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집행 및 과년도분 징수부진	민간융자금 융자실적 <span style="float: right;">(단위:천원)</span>			○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융자금 신청자에 대하여 미융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계획입니다.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융자금)		예산잔액 (미융자금)	융자비율 (%)
		1,178,033	258,000	258,000		920,033	21.0
		과년도분 징수실적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비율
		16,100	33,551	15,388		16,163	45.8
전년도 이월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완정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대책없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징수결정액의 45.8%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융자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액의 21.9%의 부진함은 업무소홀로 인정됨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금은 년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 강력히 추진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나, 1차로 연말인 11월 15일에 융자대상자 추천을 받아 12월 17일에 농협에 대상자를 선정통보함으로써 미융자금에 대한 융자대상자 선정기간이 없어 융자실적이 저조하였음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확인자 : 재 무 과 장    제정봉 (인)  
 작성자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인)

연 번	건 명	지 적 사 항 요 약	시 정 및 조 치 사 항 (계 획)	담 당 부 서																																																																																																								
10	○ 균유재산의 관리소홀	현황 <span style="float: right;">(단위:천원)</span>	○ 토지이동상황조서작성완료 : 2002. 09 30  ○ 지목변경요청의뢰 : 종합민원실(2002. 10. 10)	재무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font-size: x-small;">현지목</td> <td style="font-size: x-small;">계</td> <td style="font-size: x-small;">전</td> <td style="font-size: x-small;">답</td> <td style="font-size: x-small;">대지</td> <td style="font-size: x-small;">임</td> <td style="font-size: x-small;">잡</td> <td style="font-size: x-small;">묘</td> <td style="font-size: x-small;">구</td> <td style="font-size: x-small;">유</td> <td style="font-size: x-small;">천</td> <td style="font-size: x-small;">제</td> <td style="font-size: x-small;">과</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미변경 지목</td> <td></td> <td></td> <td></td> <td></td> <td style="font-size: x-small;">야</td> <td style="font-size: x-small;">종</td> <td style="font-size: x-small;">지</td> <td style="font-size: x-small;">거</td> <td style="font-size: x-small;">지</td> <td></td> <td style="font-size: x-small;">방</td> <td style="font-size: x-small;">수 원</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48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td> <td style="text-align: center;">208</td> <td style="text-align: center;">52</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도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466</td> <td style="text-align: center;">99</td> <td style="text-align: center;">205</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69</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구거</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유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제방</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td> <td></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수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현지목	계	전	답	대지	임	잡	묘	구	유	천	제	과	미변경 지목					야	종	지	거	지		방	수 원	계	485	101	208	52	70	8	4	12	8	18	1	3	도로	466	99	205	50	69	8	4	12	8	7	1	3	구거	4	1	1	2									유지	2	1	1										제방	12		1							11			수도	1				1							
		현지목			계	전	답	대지	임	잡	묘	구	유	천	제	과																																																																																												
		미변경 지목							야	종	지	거	지		방	수 원																																																																																												
		계			485	101	208	52	70	8	4	12	8	18	1	3																																																																																												
		도로			466	99	205	50	69	8	4	12	8	7	1	3																																																																																												
		구거			4	1	1	2																																																																																																				
		유지			2	1	1																																																																																																					
		제방			12		1							11																																																																																														
		수도			1				1																																																																																																			
토지의 지목변경은 재산의 취득목적이 달성되었을시 즉시 지목 변경하여 재산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지목 미변경 필지수가 485필지로 균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